




문서번호	기획예산과-699
결재일자	2015. 1. 19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방침번호	

주무관	예산팀장	기획예산과장	기획재정국장	
박영수	이정희	이윤영	01/19 김종순	
협조	계약팀장	김종수		
	지출팀장	문경옥		



2014 회계연도 세출예산 사고이월 추진계획

2015. 1.



성 동 구
(기획예산과)

2014 회계연도 세출예산 사고이월 추진계획

2014년도 사업예산 중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사고이월을 추진하여 원활한 예산집행과 사업의 계속성을 확보하고자 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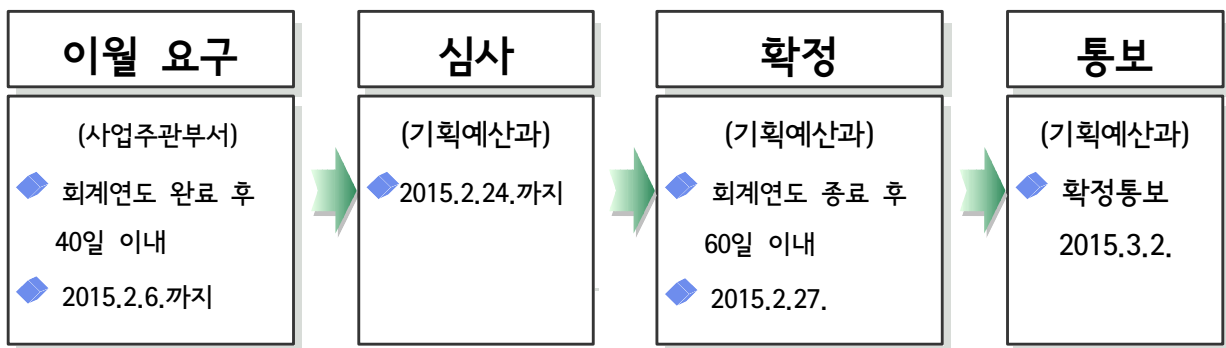
I 추진근거

- 지방재정법 제50조, 동 시행령 제58조
-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무회계 규칙 제28조

II 추진방향

- 사고이월 사업부서 요구 사업에 대한 엄격한 심사로 이월 규모의 최소화
- 사고이월 유형별 원인분석,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그 결과에 따라 '15년 재정운용 및 '16년 예산편성에 활용

III 추진절차



IV 사고이월 대상

□ 개념

- 각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으나
-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및 기타의 금액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예산의 신축적 운용과 사업의 계속성 확보를 위한 제도

□ 대상

-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2014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
(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 제1호)

※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

- ◆ 세출예산의 지출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 구체적 행위를 한 것으로서
- ◆ 2014.12.31.까지 지출원인행위부에 등재를 필한 것

※ 불가피한 사유

- ◆ 재해 또는 관급자재의 공급지연, 기타 장애요인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공사·제조 등이 당해 연도 내에 완성되지 못하여 지출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하며,
- ◆ 특별한 사유나 분명한 이유 없이 이월을 전제로 한 공사의 발주나 물품의 제조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항은 사고이월 대상에서 제외됨.
 - ☞ 제외대상) 일상유지관리비 등 다음연도 예산으로 집행 가능한 경비, 집행 잔액을 임의로 타 사업비로 원인행위 후 이월 요구한 경우, 막연한 시설부대비 등

※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

- ◆ 지출원인행위를 필한 사고이월사업에 부대하여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당연히 필요하게 된 從된 경비로서, 主된 사업의 진행정도에 따라 지출이 발생되어 구체적 또는 별도의 지출원인행위가 불가한 경비에 한함.
 - ※ 단, 지출원인행위를 필한 주된 사업의 이월이 없는 부대경비만의 이월이나 주된 사업과 별개의 사업으로 독립 추진되고 있는 경비는 지출원인행위가 없는 한 사고이월이 불가함.

-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 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
(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제1항)

- ◆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방법으로 집행되는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
- ◆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으로 집행되는 경비
- ◆ 대형공사 등 입찰공고된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
- ◆ 재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

- 공익·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
(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제2항)

- ◆ 보상대상이 되는 토지·물건 등의 조사 및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보상절차에 착수하였거나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경비
- ◆ 공사완료 후 존속하는 어업권의 피해에 관한 보상비 등 간접보상비로서 보상에 필요한 감정평가를 위한 용역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감정평가가 진행 중인 경비
- ◆ 재해복구사업을 위한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

V 행정사항

- e-호조 전산입력 및 대상사업 제출기한: 2015. 2. 6.(금)

※ 단, 사고이월 요구서 제출 후 출납폐쇄일(2015.2.28.) 전에 발생하는 지출금액은 사고이월액에서 제외되므로 즉시 사고이월요구서 (수정)제출

- 사고이월 요구사업 집행 - 2014.12.31.까지 지출원인행위를 한 예산만 해당됨

- 2015. 2. 28.까지: e-호조 상 2014회계연도에서 집행

- 사고이월 확정 후: e-호조 상 2015회계연도에서 집행

※ 제출서류

- 사고이월요구서 (서식1), 이월사업별 명세서 (서식2)
- 지출원인행위부, 지출부 각 1부(e-호조/지출관리/지출결산/일반지출집행실적에서 출력)
- 그밖의 관계 방침서 등 증빙서류
 - 공사비: 계약서 및 준공연기 각서 사본
 - 보상비: 감정평가서, 지번별 사정액 조서, 계약서, 토지수용위 재결통보서 등
 - 지출원인행위미필 부대경비 이월액: 미필사유서 및 부대경비 산출내역서

- 붙임
1. 사고이월요구서(엑셀 서식1) 1부
 2. 사고이월 사업별 명세서(한글 서식2) 1부
 3. e-호조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 확인 방법 1부
 4. e-호조 전산등록 방법 1부. 끝.